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허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준비토록 하여 건축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술위원회개최전 미술장식품 가격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시부에서 확인토록하여 파주시 미술위원회와 중복 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에 제출토록하여 건축허가된 후에 미술장식품 관련서류 준비와 작가와 작품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경감.
- 미술작품의 가격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시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파주시미술위원회와 중복 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시정
- 미술위원회 위원 구성중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함.

□ 검토의견

가 미술장식품 설치 제도 개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 종류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조례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그 건축물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조례

제6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이상

2. 공동주택(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이상.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중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나 승인시가 아닌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 제출토록 한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동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중 다음 사항은 논의가 필요함.

첫째,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을 미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인적구성상 가격감정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가격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5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 계약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둘째, 미술장식품의 설치계획서 심의요구시 첨부서류에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다 너무 많은 서류를 첨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현행조례 첨부서류	개정조례안 첨부서류
1.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2부 2.작가경력서 사본 1부 3.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1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 12부 (건축개요, 미술장식품 개요,건축물의 배치도 또는 미술장식품 주위 현황 도, 작품사진, 작품도면,건축물과의 조화(컴퓨터시뮬레이션),건축물 투시 도등)